

미국 판결

피고의 기자회견 보도 내용과 관련된 libel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현실적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한 사례

텍사스주 제1항소법원(Texas Court of Appeals First District)
 재 판 부 : 재판장 RADACK, 배석판사 KEYES, HIGLEY.
 사 건 번 호 : 01-08-00009-CV.
 원고(피항소인) : David TANG
 피고(항소인) : Jianguang WANG 및 Yellow Emperor Communications, Inc.
 D/B/A Houston Chinese Press
 1 심 법 원 :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Texas District Court, Harris County)
 2008. 6. 5.

미디어 내용의 규율

에 대한 개연성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명예훼손-책임의 기준-현실적 악의

[2] 명예훼손-명예훼손적 내용-부정확한 인용

이해관계 있는 증인들 명의의 선서 진술서들은 “명료하고 분명하며 직접적이고, 그 밖에 신뢰할 만하고 모순과 불일치가 없으며, 여기에 기꺼이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탄핵 가능한 것” 이라면, 법률문제로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는 문제된 진술의 진실 또는 거짓에 대한 그의 주관적 정신 상태와 신념에 관하여 선서 진술서에 의하여 증언 할 수 있지만,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선서 진술서는 문제된 진술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의 신념

피고 중국어 신문의 편집장은 CCC의 기자회견에서 유발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인하였다. 그 기자회견은 CCC의 과다 회계 및 재정문제에 관한 논쟁을 전달하는 자리였는데, 원고 CCC의 부의장은 폐회사를 하면서 “일본 악마들”의 침략을 언급하였다.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할 입증책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전환된다. 첫째, 사실심리생략판결의 증거로서 제출된 피고의 선서 진술서는 피고가 공표 당시 진술(보도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고 진술들의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

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줌으로써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진술들에 대하여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서 진술서는 피고가 자신의 사고 과정과 함께 일본 침략 언급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그 언급이 이루어진 맥락에서 자신으로서는 언론을 포함한 청중들이 원고가 언급한 “일본 침략자”로 보였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피고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진술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피고의 진술은 피고 신문이 보도한 방식처럼 원고의 발언들을 이해한 다른 청중들의 선서 진술서로 보강되었기 때문이다.

[3] 명예훼손-명예훼손적 내용-부정확한 인용 명예훼손-책임의 기준-현실적 악의

사실심리생략판결에서는 원고 CCC의 부의장이 기자 회견의 폐회사에서 “일본 악마들”에 의한 침략 발언을 하게 된 의미를 중국계 지역사회가 단결하여 CCC의 재정적 난관들을 극복할 것을 촉구함에 있고 중국계 지역사회와 언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실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중국어 신문과 피고 편집장이 원고의 폐회사 전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이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첫째로 생략으로부터 회복을 구하는 공인은 공표자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소재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가 기자 회견에서 원고의 발언들을 직접 들었고, 기사가 공표되기 전에 원고의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현실적 악의에 관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진술의 후반부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강력하게 의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수정헌법 제1조는 기사 내용에 관한 편집상의 선택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원고는 기자 회견의 흐름상 및 원고에 의한 비유발언의 자극적 속성상 원고 발언들에 대한 피고 해석이 그럴듯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판단상 과오들은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4] 명예훼손-책임의 기준-현실적 악의

전문가 선서 진술서에서 전문가는 원고 진술의 절반을 생략하여 인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고 원고 진술의 일부만 공표한 유일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원고가 실제 말한 것과 달리 잘못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데, 전문가 선서 진술서가 유력한 증거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전문가 선서 진술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첫째, 전문가 의견은 객관성의 기준에 대한 무모한 경시와 관련되어 있을 뿐 진실에 대한 무모한 경시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적 악의는 오로지 피고의 정신 상태만을 조사할 뿐인데,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적 지식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사 LAURA CARTER HIGLEY

David Tang의 libel(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문서

등 영구적 형식에 의한 명예훼손, 주로 서면이나 인쇄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림) 소송에서 1심 사실심 법원은 Houston Chinese Press가 제기한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간적 항소(interlocutory appeal) 사건에서 우리는 1심 사실심 법원의 기각결정이 정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한적 공인(a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¹⁾인 Tang이 그의 libel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실적 악의 요소에 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an issue of material fact)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Houston Chinese Press가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파기하고 판결한다.

기초사실

Chinese Civic Center(이하 'CCC' 라고 한다)는 휴스턴 지역 중국계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활동들을 제공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CCC는 그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005년 CCC는 연극 '찾집'을 공연하기 위하여 휴스턴 지역에 '베이징 사람들의 연극 극장'을 유치하는 것을 도왔다. 휴스턴 지역 공연 후에 중국계 지역사회에서 그 공연과 관련된 CCC의 재정적 회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CCC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관심도 생겨났다.

2006. 4. 22. CCC는 새로운 임직원들을 소개하고 '찾집' 공연 문제를 포함해서 CCC 회계와 재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

회견의 초기에 David Tang은 CCC의 새로운 부의장으로 소개되었다. 그 모임에는 Houston Chinese Press의 편집장 Jianguang Wang을 포함해서 중국어 언론과 중국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 도중 위원들은 CCC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하여 청중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몇몇의 청중들은 위원회의 관리방식을 비판하였고, 때때로 기자회견의 분위기는 경직되었다.

Tang은 기자회견에서 식순의 주제자로 활동하였지만, 어떠한 청중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의 말미에 Tang은 아래와 같은 폐회사를 하였다.

최근 나는 한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작년에는 우리는 대일항전 승리 60주년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한가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오늘 그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일본 악마들의 침략에 맞서, 그들은 이러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영토의 1인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오늘 우리 모임의 결론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사회가 활동하는 한, 우리가 지역의 사회의 마음에 따뜻한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한, 우리, CCC는 확실히, 확실히 지난 10년간 찬란한 활동을 벌여왔고, 향후 10년 이상 찬란한 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4. 30. Houston Chinese Press는 "귀신(Guizi, 번역하면 "일본 침략자들")이 온다: CCC의 위원회는 일본에 항쟁하기로 맹세하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공표하였다. 그 기사는 청중이 제기한

1) (번역자 주) 제한적 공인이란 특정한 공적 논쟁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참여시키거나 참여가 되고 그리하여 제한적 범위의 쟁점들에 한하여 공인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하고, 위원회 답변의 타당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으며, CCC의 재정과 관련된 회계 불일치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그 기사는 또한 “일본 악마들”에 의한 침략을 언급한 Tang의 폐회사 일부를 인용하였지만, Tang의 폐회사 중 위에서 빗금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Tang의 폐회사에 관하여, 기사의 일부를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 침략자들”은 확실히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전쟁에서 적들, 즉 8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약탈, 대학살, 강간, 기타 모든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 귀신을 언급한다. David Tang은 비유적 방식으로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그런 다음 그는 “전선을 방어함에 있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며, CCC 위원회의 단결력을 향상시킬 것 등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추려낸다면, David는 지역사회를 일본에 대한 전쟁터로, CCC를 일본 침략자에 대하여 싸우는 전선으로 삼고 있다. 그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임 중 및 모임 후 당혹감을 느꼈다. David Tang이 언급한 일본 침략자들은 언론매체인가, CCC를 지지하고 관심을 갖고 CCC에 기부하는 참석자들인가? CCC의 몇몇 임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중국인들이 혐오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는 “일본 침략자들”로 사실상 되었다면, CCC를 제외한 휴스턴 중국계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본인이고 따라서 사실상 CCC는 반일 기관이 될 것이다. 한편,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기금은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얻어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다시 질문을 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 CCC가 생긴 이래로 CCC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다가, 지금 지역 사회가 예의주시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유는 “일본 침략자들”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CCC는 휴스턴 지역 해외 중국인들의 안식처(home)이다. 자신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중국인들의 전통이다. 우리는 CCC가 잘 관리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불법적인 행태의 관리행위를 규탄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일본 침략자들”로 고려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안식처를 사랑한다.

CCC에 문제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꿀치덩이들”로 간주하지 말라. CCC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Lang Yanshan에서의 영웅들로 생각한 일본 침략자들로 간주하지 말라. CCC에서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CCC의 전체적인 이익 보다 위에 두지 말라. 그와 달리 “일본 침략자들”이 온다면, 당신들이 당신들 자신의 전선을 지킬 수 있는가? 기억해라. 전선을 지키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을 사랑하여 “일본 침략자들”로 매도된 전체 지역사회일 것이다.

11개월 후 Tang은 Wang과 Houston Chinese Pres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4. 30.자 기사에 기초한 libel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Tang의 주장에 의하면, Tang 자신의 기자회견 폐회사 전문을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Houston Chinese Press는 Tang이 중국계 지역사회와 언론매체를 “일본 침략자들”로 언급하였다는 식으로 그의 말의 의미를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전달하였다. Tang은 그의 말 전문을 들었을 때 그의 폐회사는 오로지 아래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CCC는 향후 10년간 휴스턴 지역 해외 중국계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 서나갈 것이다.” Tang은 그의 폐회사를 통하여 그가 휴스턴 지역 중국계 지역 사회를 “일본 침략자들” 또는 “귀신”이라고 언급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부인하였다.

Houston Chinese Press는 Tang의 libel 소송에 대

하여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²⁾ 신청을 하였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의 근거들 중 하나로 Houston Chinese Press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명예훼손적 진술들을 공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Tang은 일본 침략 언급 외에도 4, 30자 기사와 다른 내용들에 기초한 libel 청구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의 청원서를 수정하였다. Houston Chinese Press는 Tang의 libel 관련 새로운 주장들이 시간적 제한에 걸린다는 점을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에 추가하였다. 심문을 거쳐, 1심 사실심법원은 Tang이 청원서를 수정하여 포함시킨 추가적인 libel 청구에 대하여 Houston Chinese Press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인용하였다. 1심 사실심 법원은 Wang이 CCC의 위원회에 “일본 침략자들” 또는 “귀신”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휴스턴 지역 중국계 지역 사회에 각성을 일으킨 기사 내용과 관련된 libel 청구에 대하여 Houston Chinese Press가 제기한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하였다.

Houston Chinese Press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한 1심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이 사건 중간적 항소(interlocutory appeal)³⁾를 제기하였다. Tex. Civ. Prac. & Rem.Code Ann. § 51.014(a)(6) 참조.

전통적인 사실심리생략판결의 기준 및 청구요건 (Elements of Claim)

우리는 새로운 심리 원칙(de novo standard, “de novo”는 new trial이라는 의미로서, 재심리, 새로운 소송절차로도 불림)에 따라 사실심리생략판결의 법리를 검토한다. Provident Life & Accident Ins. Co. v. Knott, 128 S.W.3d 211, 215 (Tex.2003). 검토를 함에 있어 우리는 피신청인의 적법한 증거를 진실하다고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모든 합리적 추론을 하며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모든 의문들을 해결한다. Diversicare Gen. Partner, Inc. v. Rubio, 185 S.W.3d 842, 846 (Tex.2005). 법률문제로서 원고의 청구를 유지시키는 필수적 요건 가운데 적어도 하나라도 깨뜨린다면, 피고는 전통적 사실심리생략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다. Science Spectrum, Inc. v. Martinez, 941 S.W.2d 910, 911 (Tex.1997) 참조.

제한적 공인인 Tang은 명예훼손 소송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Houston Chinese Press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공표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2, 94 S.Ct. 2997, 3008, 41 L.Ed.2d 789 (1974) WFAA-TV, Inc. v. McLemore, 978 S.W.2d 568, 571 (Tex.1998) 참조. Houston Chinese Press는

2) (번역자 주) summary judgment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완전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판, 약식판결, 약식재판, 즉결판결, 중간판결로 불리는데,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보통 Fed. R. Civ. P.라 인용되나, 여기서는 평의상 FRCP라 칭한다)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trial)은 사실이 다투어질 때에 필요한데, 사실의 다툼이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당사자는 재판을 통한 사실심리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FRCP §56). 이 신청은 피고의 답변이 제기된 이후 어느 때나 제기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통상 실질적인 증거개시절차(discovery)가 행하여진 후에 제기된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심문 없이 이 신청을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전부 인용시 사건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며, 일부 인용시 분쟁 중인 쟁점만 본격적인 재판절차로 나아가고, 기각시 모든 쟁점에 대한 재판절차로 나아간다.

3) (번역자 주) 중국판결의 원칙(final judgment rule, 중국성의 원칙으로도 불림) : 1심 재판 과정에서 등록된 명령, 이른바 중간적 명령(interlocutory orders)은 중국 판결에 대한 항소와 결부하여 심사될 수 있고, 그에 앞서 중간적 항소(interlocutory appeal)라는 이름으로 심사될 수 없다. 다만, 중간적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면, 항소심에 의한 심사(appellate review)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적 항소가 허용된다.

법률문제로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정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에서 승소할 수 있다. *Hearst Corp. v. Skeen*, 159 S.W.3d 633, 637 (Tex.2005) *Huckabee v. Time Warner Entm't Co. L.P.*, 19 S.W.3d 413, 420 (Tex.2000) 참조. *Houston Chinese Press*가 이러한 입증을 충족시킨다면, Tang은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적 차원의 현실적 악의

A. 적용 원칙

공인들이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 기준은 공적 분쟁(public issues)에서 의도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보호하는 반면, “계산된 거짓말(calculated falsehoods)”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Turner v. KTRK Television, Inc.*, 38 S.W.3d 103, 120 (Tex.2000) 참조. 명예훼손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는 피고가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진술을 하였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New Times, Inc. v. Isaacks*, 146 S.W.3d 144, 162 (Tex.2004) *Huckabee*, 19 S.W.3d at 420. 무모한 무시(Reckless disregard)는 피고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두는 주관적 기준이다. *Isaacks*, 146 S.W.3d at 162; *Bentley v. Bunton*, 94 S.W.3d 561, 591 (Tex.2002). 특히,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공표의 진실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들을 심각하게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고려하였거나, 공표된 정보가 허위일 개연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Isaacks*, 146 S.W.3d at 162 (인용 *Bentley*, 94 S.W.3d at 591). 공인은 피고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 있다. *Bentley*, 94 S.W.3d at 591.

B.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는 Wang의 증거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정하기 위하여, *Houston Chinese Press*는 편집장인 피고 *Jianguang Wang*의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였다. 이해관계 있는 증인들 명의의 선서 진술서들도 “명료하고 분명하며 직접적이고, 그밖에 신뢰할 만하고 모순과 불일치가 없으며, 여기에 기꺼이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탄핵 가능한 것”이라면, 법률문제로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Tex.R. Civ. P. 166a(c)* *Huckabee*, 19 S.W.3d at 424 참조.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는 문제된 진술의 진실 또는 허위에 대한 그의 주관적 정신 상태와 신념에 관하여 선서 진술서에 의하여 증언하는 것이 허용된다. *Casso v. Brand*, 776 S.W.2d 551, 559 (Tex.1989) 참조. 그러나,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선서 진술서는 문제된 진술의 진실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의 신념에 대한 개연성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야 한다. *Huckabee*, 19 S.W.3d at 424. Wang의 선서 진술서는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먼저, Wang의 선서 진술서는 명예훼손적 진술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다. Wang은 공표 당시 “허위”라고 볼 만한 기사 내용을 “알지 못했다”, “기사내용의 진실성에 어떠한 의문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선서하고 진술하였다. 특히, Wang은 아래의 부분을 선서하고 진술하였다.

나는 Tang이 이러한 대결적 모임 말미에 일본의 중국 침략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놀랐으며 충격을 받았다. 나는 Tang의 발언이 찻집 공연과 CCC의 재정 및 회계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중들과 언론들을 향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내 견해로는, Tang이 그의 발언에서 언급했던 유일한 것은 CCC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그들 모두는 거의 중국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었다.

나는 모임 말미의 맥락에서 Tang의 말들을 이해했다. 나는 “일본 침략자들”, “우리 지위의 방어”에 관한 Tang의 말들이 CCC의 조치들과 CCC 지위들의 방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나는 Tang이 CCC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중국의 적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아마도 Tang의 진술들이 과장이었겠지만, 나는 그의 진술이 CCC의 조치들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선서 진술서는 Wang이 문제된 명예훼손적 진술들이 진실이라는 그의 믿음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Wang은 그가 CCC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Tang이 일본의 중국 침략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Wang은 Tang의 일본 침략 발언에 관하여 중국계 지역사회에의 역사적 의미로 설명하였다. Wang은 Houston Chinese Press의 기사내용들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내면적 사고과정을 묘사하였다. 특히, 그는 Tang의 발언이 청중(거의 모두가 중국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었다)과 CCC위원회(그 중 한명이 Tang이다) 사이의 “대결적 모임” 끝부분에 나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Wang의 관점에서 참석한 언론을 포함해서 청중들은 Tang이 마무리 발언에서 언급한 일본 적대자로 보였다.

또한 Wang은 청중의 다른 구성원들이 Tang의 발언들에 충격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선서하고 진술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일본 침략 발언을 듣자마자 “My God!”라고 소리치는 한 여자를 포

함하고 있다. Wang은 선서 진술서에서 이러한 반응을 볼 때 다른 청중들이 그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Tang의 발언을 해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Wang은 그의 선서 진술을 다른 5명의 청중들이 Tang의 발언을 듣고 작성한 선서 진술서로 보강하였다. 이 5명 각자는 Houston Chinese Press가 보도한 방식대로 Tang의 발언을 해석하였다. 특히 4명의 선서 진술인들이 이해한 바로는 Tang이 CCC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청중들의 문제제기를 일본의 중국 침략과 동일시하고, 중국어 언론과 중국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인 청중들과 “일본 침략자들”을 비교하였으며, CCC위원회를 방어자인 중국 군대에 비유하였다. 마지막 1명의 선서 진술인은 Tang이 “청중과 일본 침략자들을 혼동하였다”고 믿었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나아가 Wang은 기자 회견을 다룬 다른 중국어 신문들의 2개 기사를 제출함으로써 그의 선서 진술을 보강하였다. 그 기사 중 하나는 Chinese Times에 실렸는데, 기자 회견 동안 문제를 제기한 측과 CCC위원회 사이에 발생한 긴장감을 묘사하였다. 일본 침략 동안 중국 군인들이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Tang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기사는 Tang이 “아마도 일을 잘 처리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언론은 그의 발언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 기사는 ‘우리는 모두 일본 악마들과 앞장이 군대들로 매도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어 신문 World Journal에 실린 다른 기사는 기자 회견의 논쟁적 특징을 묘사한다.

제출된 사실심리생략관결의 증거를 토대로 우리는 Wang이 현실적 악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결

론을 내린다. Wang의 선서 진술서는 “명료하고 분명하며 직접적이고, 그 밖에 신뢰할 만하고 모순과 불일치가 없으며, 여기에 기꺼이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탄핵 가능한 것”이다. 그의 선서 진술서에서, Wang은 현실적 악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의 믿음의 기초를 묘사한다. 따라서,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할 입증책임이 Tang에게 전환된다. *Freedom Newspapers of Tex. v. Cantu*, 168 S.W.3d 847, 853 (Tex.2005) (부정확함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기사 내용들의 정확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발행인과 편집장 명의의 선서 진술서는 신문이 악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증거이고, 사실심리생략판결을 기각시킬 반대 증거를 제출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Hearst*, 159 S.W.3d at 637 (광범위한 조사에 기초하여 볼 때 기사가 진실하고 정확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는 필자의 선서 진술서는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게 하고 사실적 쟁점을 제기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판단하였다) *Isaacks*, 146 S.W.3d at 164-65(편집장, 편집 간사, 필자의 선서 진술서가 법률문제로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결여토록 한다는 이유로 피고 언론사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였다) 참조.

C. 현실적 악의에 관한 Tang의 증거

1. Tang의 진술 일부분 “생략” 문제

위에서 언급하였고 사실심리생략판결 증거에서 검

토하였듯이, Tang은 기자회견의 말미에서 아래의 진술을 하였다.

(위 빗금친 표시 부분)⁴⁾

증거는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 진술의 일부분만 공표하였음을 보여준다. 위 빗금친 표시 부분 중 밑줄친 부분을 공표하지 않았다.

선서 진술서에서, Tang은 그의 진술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오늘날에도 슬로건(slogan)은 보통 사용되는 표어이다. 슬로건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꾸준하게 계속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들이 충분히 명확히 한 대로, 내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들은 긍정적인 논조로 결론을 내리고자 함이었다. : CCC와 그의 마음씨 따뜻한 지역사회 친구들이 함께 일하는 한, CCC는 장래에 중국계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고, 더욱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우리와 같은 박수를 들었다. 나는 어떠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사실심리생략판결 절차에서, 우리는 CCC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계 지역사회의 단결을 촉구할 의도로 진술하였다는 Tang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Cantu*, 168 S.W.3d at 855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Tang은 여전히 *Houston Chinese Press*가 공표 당시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Tang은 *Houston Chinese Press*에 의하여 저질러진 그의 진술 “변경(alteration)”

4) (번역자 주)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자체가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Tang은 Houston Chinese Press가 위에서 본 밑줄친 말을 생략함으로써 Tang의 진술을 “변경시켰고”, “왜곡시켰으며”, “전적으로” 의미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Tang은 Houston Chinese Press가 잘못된 인상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그의 발언 중 마지막 부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고 주장한다. Tang은 자신이 중국계 지역사회를 “귀신” 또는 “일본 악마들”이라고 불렀다는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Houston Chinese Press가 “변경된” 기능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한다.

Tang은 인용문의 일부만 알면서도 공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Houston Chinese Press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증거라고 추론한다. 특히, Tang은 “피고가 알면서도 변경된 또는 불완전한 인용문구를 공표하고 그러한 변경 또는 불완전한 문구가 실제의 인용문과 실질적으로 달라졌을 때” 현실적 악의는 제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미에 Tang은 Wang이 전체 진술 내용을 알았지만 일부만 공표하기로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증거를 제시한다. Tang은 Wang이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에서 Tang의 발언을 들었고 또한 기사가 공표되기 전에 그 진술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검토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인용한다.

그의 사실심리생략판결의 답변으로, Tang은 주장한다.

피고가 기자회견의 비디오를 가지고 있었고, Tang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진술의 절반정도를 생략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의미 변경을 알면서도 또는 의미 변경 여부에 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진술을 공표하였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Tang의 입장과 달리, 이것만으로는 현실적 악의에 관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생략으로 회복을 구하는 공인은 공표자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소재를 선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Huckabee, 19 S.W.3d at 426. 현실적 악의의 증거인 생략에 대하여, 원고는 생략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공표자가 알았거나 강하게 의심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Turner, 38 S.W.3d at 121. 생략이 매우 눈에 띄고 결과적으로 왜곡의 정도가 커야 그 자체로 현실적 악의의 증거를 구성한다. Huckabee, 19 S.W.3d at 426. “그러한 사건에서, 생략이 이야기의 성질을 변화시켜 피고로서는 생략이 잘못된 인상을 전달해줄 것이라고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Houston Chinese Press 기사의 전체적인 목적은 기자 회견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CCC위원회는 CCC의 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답변하였고,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기사는 기자 회견의 논쟁점과 위원회에 질문을 던진 사람들을 향한 감지된 적개심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Houston Chinese Press는 일본의 중국침략 비유에 관한 Tang의 말을 인용하였다.

비록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의 세밀한 발언 전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Tang은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의 발언 중 마지막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강하게 의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지적하였듯이, Wang은 그의 선서 진술서를 통하여 논쟁을 불러일으킨 기자회견의 맥락에서 Tang이 CCC위원회에 질문을 던진 중국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일본 침략자들”로

언급한 것이라고 믿었음을 진술하였다. Wang으로서는 이것이 “주목할 만한” 또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발언이었다. 결론적으로, Tang의 발언 중 이 부분이 Houston Chinese Press가 공표하고자 선택하였던 부분이다. Tang은 그의 진술 중 생략된 부분이 “특히 그 기사가 Tang에게 덮어씌운 명예훼손적 혐의를 반박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Tang의 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단지 듣는 사람의 관점에 따른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Tang의 진술들을 허위로 묘사하기 위하여 그의 발언들을 생략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미 수정헌법 제1조는 기사에서 어떠한 소재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Houston Chinese Press의 편집상의 선택을 보호한다. Tang은 그의 발언들에 대한 해석을 담은 Wang의 선서 진술내용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Tang은 기자 회견의 흐름상 및 Tang에 의한 비유 발언의 자극적 속성상 Wang의 해석이 그럴듯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Cantu, 168 S.W.3d at 855 (애매한 사실들에 대한 이해할만한 오해는 현실적 악의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Tang의 발언들에 대한 Wang의 이해에 비추어 볼 때,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의 폐회사 전부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해주지 않는다. Huckabee, 19 S.W.3d at 425 (공표가 특정한 관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는 강력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해도 현실적 악의의 증거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참조. 기껏해야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의 발언 도입부만을 포함시킨 결정은 Tang의 발언들에 대한 Wang의 해석과정에서 빚어진 판단상 실수에 불과하였다. 판단상의

실수들은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Time Inc. v. Pape, 401 U.S. 279, 290, 91 S.Ct. 633, 639, 28 L.Ed.2d 45 (1971) (“추정된(alleged)”라는 단어를 생략한 피고의 해석이 현실적 악의의 증거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비록 그러한 해석이 오프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다); Huckabee, 19 S.W.3d at 426 (비록 생략된 사실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독자라면 보도된 것과는 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세한 것들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피고 언론의 잘못을 판단상 과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 악의의 증거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참조.

우리는 Tang이 그의 폐회사 전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한 Houston Chinese Press의 결정이 현실적 악의에 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린다.

2.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 Testimony)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기 위하여, Tang은 휴스턴 지역에서 가장 큰 Chinese press의 편집자 John Robbins 명의의 “전문가 선서 진술서(expert affidavit)”를 제출하였다. 그 편집자는 기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의 의견을 형성하기에 앞서, Robbins는 기자 회견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Houston Chinese Press의 해당 기사를 읽었다. 선서 진술서에서, Robbins는 “단지 절반의 인용을 전체의 인용으로 공표하고 언급한 다음 절반의 인용을 토대로 사실로 쓰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Robbins는 Tang의 진술 중 발췌된 부분만 공표한 유일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Tang이 말한 것을 잘못 전달하기 위해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Tang의 주장과 달리, Robbins의 진술은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전문가 증언은 ‘그 의견이 진실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객관성의 기준에 대한 무분별한 경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Gonzales v. Hearst Corp., 930 S.W.2d 275, 283 (Tex.App.-Houston [14th Dist.] 1996, 불게재) (Harris v. Quadracci, 856 F.Supp. 513, 519 (E.D.Wis.1994)를 인용). 게다가, 현실적 악의는 단지 피고의 정신 상태만을 조사하는데, Robbins는 그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가적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다. Cantu, 168 S.W.3d at 858-59 참조. Robbins의 의견은 피고의 정신 상태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주는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사를 읽고 기자회견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한 것에 토대를 두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 선서 진술서”가 유력한 증거라고 가정하더라도, Houston Chinese Press가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거나, 진위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경시하면서 명예훼손적 진술들을 공표하였다는 점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인데, Robbins의 의견은 이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사실심리생략판결의 기록은 법률문제로서 Houston Chinese Press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 발언들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Tang은 현실적 악의 요건에 관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보여줄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Houston Chinese Press가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Houston Chinese Press의 첫번째 쟁점을 받아들여, 1심 사실심 법원이 Houston Chinese Press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한 한도에서 1심 사실심 법원의 명령을 파기하고 Tang이 패소한 것으로 판결한다.

출 처 : Media Law Report Vol.36, No.25, PP.1769~1800

번 역 : 흥 기 만 (춘천지방법원 판사) □

독일 판결

중요하지 않은 사실주장의 인격권 침해 여부

해당조문 : 기본법 제1조, 제2조; 민법 제823조, 제1004조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의 제1소위원회) 2007년 10월 23일자 결정 - 1 BvR 150/06

판결요지

1. 어떠한 주장이 당사자의 인간상에 중대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허위사실에 불과한 경우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방어적 청구권의 허용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2. 어느 출판매체가 특정 문제에 대해 누군가를

언급한 경우 그 기사내용에는 처음부터 인격권과 관련된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사자의 인간상이 중대한 형태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는지의 판단여부는 출판사의 특성과 평판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가 공중에게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평가와 같은 개별 사례의 상황의존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사실관계

소송 청구인은 그의 인격권이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작위소송이 기각됨으로써 이의 무효화를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자본투자자들의 집단에서 중요한 위임을 받고 있다. 2003년 1월에 청구인은 당시 연방정부의 투자자보호프로그램에 관해 데페아 통신(dpa : Deutschen Presseagentur)과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한 대담내용은 데페아 신문보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슈테른(Stern) 잡지에서 이를 인용하게 되었다. 소송을 당하게 된 피고는 자본투자자들을 주요 독자로 하는 신문인 'Effecten Spiegel' (ES)의 발행인이었다. 피고는 3월 20일에 발행된 신문에 소송 청구인인 변호사 "R"을 제하로 하여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떠한 투자자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러 번 ES는 무의미한 소송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ES는 수차례에 걸쳐 투자자에게 돈 욕심에 눈이 어두운 변호사들이 의미 없는 손해배상소송에 끌어들이는 행태에 대해 경고하였다. 즉, 일반인들은 주식환차손실에 그들의 귀중한 돈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무의미하게 던지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정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따라 몇몇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EM.TV 사건, ComROAD 사건, Informatec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한 주요 인사 중의 하나이며, EM.TV 사건에서 500명의 주주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R은 최근에 슈테른(stern) 잡지에서 스스로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떠한 투자자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속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무효선고가 내려지는 것일까? 변호사들의 포커늘 이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 경우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떠한 투자자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데페아 통신보도 내용으로부터 인용한 것으로서 소송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간주하여 인용된 것이다.

청구인은 그가 데페아 통신이 아닌 슈테른 잡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 기사내용이 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은 먼저 뮌헨(München) 주지방법원 제1부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성공한 후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뮌헨 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본 사건에 대해 2004년 7월 13일자 판결로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에서 2005년 11월 15일자 판결로 이를 확정하였다. 항소심과 상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원고)이 슈테른 잡지에서 언급했다고 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

니다. 즉 허위사실이 매체를 통해서 일반 공중에게 전파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허위보도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언급으로 스스로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와 이것이 침해되었다고 정의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권 침해의 여부에 따라서 부작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피고가 쓴 기사에서 드러난 적절치 않은 표현은 소송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해 모욕하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소송 청구인이 자신의 인격이 표현되는 것에 대한 처분권은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공중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의 인격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소송 청구인이 데페아 통신에서가 아닌 슈테른 잡지에서 언급했다는 허위 사실로 ES의 독자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송청구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은 법원 판단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 측 입장에서는 소송 청구인이 데페아 통신과 한 인터뷰의 내용을 스스로 공중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잘못된 표현을 어떻게 보아서든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데페아 통신보도와 인용문의 관계를 빠뜨리고 ES의 보도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소송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그의 인격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S에서 청구인이 주장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는 허용된 그리고 공중에게 본질적으로 언급했던 사안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 소가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러

한 사실 때문에 그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피고가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본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비본질적인 것도 가치중립적인 것도 아닌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3자나 공중에게 묘사되고 그로 인하여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타인이 아닌 당사자 스스로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사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성과는 무관하게 약간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어떠한 출판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중에게 드러나는 본인의 인격상 형성에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피고가 가지는 권리는 침해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고가 잘못된 사실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의사의 자유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는 청구인이 데페아 통신에서 인터뷰 한 보도로부터 인용을 통하여 전혀 새롭게 창출해냈기 때문에 그의 인격권 침해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판결이유

본 사건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a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용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소송 청구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견해는 전혀 예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의 성공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1. 소송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

다는 연방대법원의 견해는 문제가 된 기사내용이 청구인의 인격권을 중대한 정도로 침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이견이 없다.

a)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함께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일반적 인격권은 자기 자신의 표현방법에 대한 처분권과 함께(BVerfGE 54 S. 148 [153 ff.] = AffP 1980 S. 149 ff.; BVerfGE 99 S. 185 [193 f.] = AffP 1999 S. 57 ff.; BVerfGE 114 S. 339 [346 ff.] = AffP2005 S. 544 ff. 참조), 어느 정도까지 타인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묘사해도 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BVerfGE 35 S. 202 [220] = AffP 1973 S. 423 ff.). 이 경우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가 된다. 그러한 면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기본권 보유자의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BVerfGE 54 S. 148 [155 f.] = AffP 1980 S. 149 ff.; BVerfGE 82 S. 236 [269] 참조).

인격권의 주체는 특히 그 스스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또는 보여지고 싶은 데로 다른 사람이 표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BVerfGE 82 S. 236 [269]; BVerfGE 97 S. 125 [149] = AffP 1993 S. 733 ff.; BVerfGE 97 S. 391 [403] = AffP 1998 S. 386 ff. 참조). 하지만 인격권은 그것이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다(BVerfGE 97 S. 391 [403] = AffP 1998 S. 386 ff.; BVerfGE 99 S. 185 [194] = AffP 1999 S. 57 ff.; BVerfGE 114 S. 339 [346] = AffP 2005 S. 544 ff. 참조). 이에 대해 일반적 인격권은 관련자가 당사자의 인격상의 형성에 대해 중대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실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의 인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b) 무엇이 사회적 가치판단의 본질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의 권한이라는 원칙으로부터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사례는 소송 청구인의 견해와 다른 예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원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소송 청구인의 입장에 서서 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상황에 따라 소송 청구인의 인격상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오히려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반영하여 연방대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단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 청구인이 허위주장으로 인해 공공에게 그의 인격상이 어느 정도 침해받을 수 있는지 충분할 정도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증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인격권 침해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문제가 된 대담의 내용이 왜 문제가 될 정도로 중대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되는 헌법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한다.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 기본권상의 기준이 됨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사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BVerfGE 101 S. 361 [388] = AffP 2000 S. 76 ff. 참조). 그러한 인터뷰 대담내용이 인격권과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한계를 위반했다고 독자적으로 평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가 된다.

c) 어떠한 대답의 내용이 인격권 침해여부와 필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단지 개별 사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상응하는 사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은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헌법적 관점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어떠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지배하고 있는 소송원칙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사실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 스스로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온 사건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인격상에 대한 대답내용의 의미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당사자의 소송제기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외에 그의 인격상이 모욕적으로 언급됨으로써 공중에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d) 이에 대해 법원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헌법적인 고려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어진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소송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슈테른” 잡지에서 말한 인터뷰 대답내용의 인격권 관련성을 명백하게 평가하지도 않았어야 했고, 헌법적 관점에서 중대성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 소송 제기가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야 했다.

동시에 어떠한 보도매체에서 누군가에 대해 특정 문제를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에 처음부터 인격권과 관련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주장이 공중에게 특정인의 인격상을 부정적으로 침해하는지의 판단기준은 특히

개별 사례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은 출판매체의 특성이나 평판뿐만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가 공중에게 인식되고 있는 가치평가에 달려있기도 하다.

개별 사례에서 이러한 경계위반을 확정할 수 있는 중대성의 경계와 어느 정도에서 당사자 소송제기가 충분한지는 모든 사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문법원이 평가하는 것이고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BVerfGE 94 S. 1; [9 f.]; BVerfGE 101 S. 361 [388] = AfP 2000 S. 76 ff. 참조).

법원은 어떠한 것이 추인될 수 있는지와 소송 청구인이 문제를 삼지 않게 될 것인지 고소의 대상이 된 대답내용에 대해 소송 청구인이 “슈테른”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슈테른”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을 추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만을 가지고 법원은 인격권이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 청구인의 대답내용으로부터 그 근거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련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왔다. “슈테른” 잡지가 가벼운 대중잡지에 불과하다는 소송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그러한 점에서 판단에 필요하고 충분한 사안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미 가벼운 대중잡지(Boulevardblatts)라는 개념자체가 생각건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다. “슈테른” 잡지가 특히 다방면에 걸쳐 품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슈테른”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함으로써 독자들이 소송 청구인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상고이유서에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은 여기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러 소송 청구인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개별적 사례조사를 위해 극단적인 사례의 형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체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으로부터는 관련 상황이 소송청구인의 인격상에 대해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추론에 반대되는 간접증거가 이미 드러난다. 왜냐하면 소송청구인은 데페아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미 스스로 그가 언급한 내용이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미 그의 이름이 “슈테른” 잡지에서 언급이 되고 그의 주장이 실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스스로 한정하고 있는 인격상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슈테른”이라는 잡지에서 주장을 펼쳤다는 내용의 기사가 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실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e) 이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기본권 위반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관련 당사자간의 이익형량을 할 필요는 없다.

2. 데페아 통신과의 대담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옳지 못하게 잘못 인용될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a) 일반적 인격권은 대화내용이 옳지 못하게 잘못 인용된 경우에 침해받을 수 있다(BVerfGE 54 S. 208 [220] = AfP 1980 S. 151 ff.; BVerfGE 97 S. 125 [149] = AfP 1993 S. 733 ff. 참조). 그러나 대화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3자가 해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된 경우에는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도록 하는 권리까지 부여하지 않는다(BVerfGE 82 S. 236

[269] 참조). 당사자는 그가 말한 내용이 올바르게 표현되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방어적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b) 피고는 그가 본래의 대화내용이 아니라 소송 청구인과 다른 가치를 담고 있는 적절히 요약되어 있는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고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의사표현의 자유로써 보호되고 있다.

소송 청구인이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떠한 투자자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실질적인 사안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의 법적분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원래 이러한 표현은 소송 청구인이 데페아 통신과 대담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투자자를 위한 가능한 법적 상황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다.

피고는 소송 청구인이 한 이러한 표현을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소송이 승소가능성이 없으며, 소송제기는 본질적으로 돈에 굶주린 변호사들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투자자보호소송이 현재의 법적 상황에 따를 경우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은 소송청구인이 데페아 통신과의 대담 내용에 해당되며 왜곡된 의사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와 철저히 연관성 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데페아 통신에서 소송청구인이 말한 표현은 지금까지 투자자의 이익이 불충분하게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지금까지 투자자보호소송에서 승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둔다면 데페아 통신과의 대담내용과 연관하여 소송과정에서의 미약한 성공이 미약한 성공가능성을 가졌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이로부터 입법자는 법

틀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소송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송절차가 부분적으로 항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한다면 결과적으로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성이 결여된 성공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의” 부족한 성공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표현의 정당성은 의문시될 수 있다. 하지만 데페아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결론을 전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의문시되지 않는다.

소송청구인이 순수하게 과거 상황과 관련하여 표현한 내용에 대해 피고가 인용과정에서 데페아 통신에서의 표현과는 달리 불충분하고 불명확하게 인용했기 때문에 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지금까지”라는 표현과 함께 데페아 통신의 독자와 마찬가지로 ES의 독자들도 소송청구인이 미래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청구인의 대담내용은 내용에 있어서 왜곡되어 표현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용에 있어서 분류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청구인의 이익과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인격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 처 : AFP 38 Jahrgang Heft 1 - 2008 SS. 55~58

번 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일본 판결 1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 본문 등 기사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가지고 판단해야만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 甲野太郎

피 고 : 乙川花子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산업경제신문사

피고대표자 대표취체역 : 佳田良能

도쿄지법 2006(7) 제25914호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2007. 12. 5 민사 제32부 판결, 청구 기각 · 확정

2007년 8월 29일 변론 종결

참조조문 : 민법 723조 · 709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00만엔 및 2006년 11월 8일(불법행위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는 「석간후지(フジ)」수도권 판에 별지1 기재(1)의 사죄광고를, 동 기재(2)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제2.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조참가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500만 엔의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안이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등

(1) 원고는 A주식회사(이하 「A사」로 한다)의 집행임원이며 피고는 동사의 전 사원이다.

(2) 피고는 2006년 9월 11일 원고로부터 세쿠하라(セクハラ·sexual harassment의 일본식 약어로 성추행을 뜻함)행위를 당했다는 이유로 원고 및 그 사용자인 A사를 피고로, 연대하여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하 「별건 소송」으로 한다) (현저한 사실).

(3) 보조참가인은 일간지 「석간후지」 2006년 11월 8일호 지면에 「『DOA(Dead on Arrival의 약자)』보다 과격했던 성추행(セクハラ)기교」라는 큰 제목으로 별지2의 기사(이하 「본건 기사」로 한다)를 게재하여 발행했다.

본건 기사에는 「甲野의 성추행으로 나는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기재(이하 「본건 ①부분」이라 한다) 및 「소장(訴狀)이나 본인의 말에 의하면 전(前) 사원이 최초로 성추행 행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은 2003년 9월 9일이었다고 한다」는 기재(이하 「본건 ②부분」이라 한다)가 있다.

2. 쟁점

- (1) 본건 기사의 명예훼손성
- (2) 본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
- (3)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 제공행위의 위법성
- (4) 원고의 손해
- (5) 사죄광고 게재의 필요성 및 상당성

3.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아래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거론되므로 생략함)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1) (본건 기사의 명예훼손성)에 대하여

(1) 신문기사의 제목은, 우선 독자의 눈을 끄는 부분이고, 독자에게 본문 기사의 내용을 추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본건 기사의 별지2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확실히 본건 기사에는 「『DOA』보다 과격했던 성추행 기교(セクハラ技)」라는 표현으로, 「성추행 기교」라는 부분이 특히 큰 활자 포인트로 기재된 큰 제목이 있다.

또한 본건 기사 중에는 「택시 안에서 강제적인

키스, 출장지에서는 관계를 강요, 「입속에 혀까지, 「부적절한 행위, 「피해자가 역으로 해고 압박받아…」 등의 소재목이 본문의 활자보다 큰 활자 포인트로 기재되는 등 성추행 행위를 특별히 나타낸 기재(記載)가 있다. 또한 본건기사 중에는 「전 사원으로부터 1,000만 엔이 청구된 초(超)인기게임 개발책임자」라는 소재목 등 성추행 행위와 원고를 결부시키는 제목도 있다.

상기 대제목과 소재목만을 보면, 본건 기사는 일반독자에 대해 「초인기게임 개발책임자」(원고)가 「전 사원」(피고)에 대해 「택시 안에서 강제키스, 출장지에서는 관계를 강요, 「입속에 혀까지, 「『DOA』보다 과격했던 성추행 기교」를 자행했고, 그 후 「피해자」(피고)가 「역으로 해고 압박을 받는」 한편 「초인기게임 개발책임자」(원고)가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격하(格下)당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건 기사에는 「전 사원으로부터 1,000만 엔의 청구를 받은 초인기게임 개발책임자」라는 제목 외에 「도쿄지법에서 재판 중」이라는 소재목도 기재되어있어, 본건 기사의 제목만을 보더라도 본건 기사가 일반독자에 대해 「전 사원」(피고)이 「초인기게임 개발책임자」(원고)로부터 「택시 안에서 강제키스, 출장지에서는 관계를 강요, 「입속에 혀까지」 등의 성추행 행위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도쿄지법에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건 기사의 제목만으로 본건 기사의 명예훼손성을 판별할 수는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제목은 독자에 대해, 본문 기사의 내용을 추지(推知)케 하여 본문

기사의 선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독자는 제목뿐만 아니라 본건 기사 전체를 통독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 본문 등 기사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가지고 판단해야만 한다.

(2) 그러면 본건 기사의 본문에 대해 검토한다.

(가) 본건 기사의 모두에는 「…甲野太郎씨(39)가 여성인 전 사원(31)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도쿄지법에 1,000만 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7일에 알게 되었다」고 성추행 행위에 관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나타낸 기재 외에 「그녀는 9월 8일에 동사를 퇴직하고 10일에 甲野씨와 동사를 제소, 10월 4일에 제1회 구두변론이 열렸다」고 전기 소송이 계속(繫屬)중임을 밝힌 기재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추행 행위에 관한 기재가 있는데, 그것들은 「소장(訴狀)이나 본인의 말에 의하면」 혹은 「…라고 한다」는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로서가 아니라 피고의 별건 소송에서의 주장임이 명시되어있다.

(나) 또한 본건 기사에는 「사내조사에서 甲野씨는 키스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의에 의한 연애했다』고 주장」이라 하고 A사내의 조사단계에서의 원고의 주장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코멘트했다」고 하여, 보조참가인의 취재에 응한 A사 담당자의 코멘트가 기재되어있다.

이러한 기재들과 전기의 소송 계속의 기재를 함께 읽어보면, 본건 기사에는 본건 성추행 행위의 유무에 대해 소송에서 원고 및 A사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별건 소송에서의 본건 피고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판명될 것이므로, 일반 독자는

피고가 주장하는 본건 성추행 행위를 곧바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 이상에 의하면,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본건 기사 전체를 볼 경우, 본건 기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성추행 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동 소송에서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본건 피고의 주장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해 원고는, 본건 기사는 단순한 제소(提訴)보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나) 확실히, 본건 기사는 그 대부분이 별건(別件) 소송의 원고인 본건 피고의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A사에 의한 사내조사 당시의 주장을 기재하는데 그쳤으며, 본건 기사 게재에 있어 원고의 주장이 게재되지 않았던 것이나, 상기 표현 중 신문기사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분이 있어 「『DOA』보다 과격했던 성추행 기교」이라는 대체목을 붙인 점 등 적절치 못한 혐오(嫌惡)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본건 기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 지에 관해서는 전기 판시한 그대로이다. 또 본건 기사가 별건 소송의 제1회 구두변론부터 약 1개월 후에 게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점에서의 보도방식으로서 현저하게 불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건 기사가 원고의 주장이나 A사의 코멘트에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건 기사가 통상적인 제소보도의 방식을 현저히 이탈(逸脫)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송상태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한쪽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독자에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소괄(小括)

따라서 본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3) (피고의 보조참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1)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귀착되나 본건 사안의 성질을 감안하여 쟁점(3)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2) 피취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신문사에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결과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기사가 보도되어 이에 의해 제3자의 사회적평가가 훼손된 경우, 당해 제3자가 그 정보제공행위에 관해 피취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취재자의 정보제공과 제3자의 사회적평가 저하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신문기사는 신문사의 취재와 편집과정을 거쳐 작성되는 것이므로, 피취재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발언내용 등이 그대로의 형태로 기사내용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취재자로서도 그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피취재자의 정보제공을 원인으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기사가 보도되어, 이로 인해 제3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피취재자의 정보제공과 제3자의 사회적 평가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피취재자가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보를 그대로의 형태로 기사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신문사와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 후 취재를 받는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취재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발언내용 등이 그대로의 형태로 기사내용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피취재자로서도 그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증거(갑36, 병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6년 10월 중순경, 「석간후지」 보도부의 北川昭夫차장(이하 「北川」으로 한다)에게 게임소프트 업계에 정통한 프리라이터로부터 「원고를 성추행으로 제소한 부하 여성이 있다. 기사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 바란다」는 취지의 정보가 들어왔다.

(나) 北川으로부터 동 정보가 기사화될 수 있겠는지 취재해 보도록 지시를 받은 동 보도부 소속의 南野和男(이하 「南野」로 한다)은 전기 프리라이터를 통해 피고와 연락을 취한 후 동월 27일 경 피고를 면담, 취재했으며, 그 취재내용은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취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원고 및 A사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성추행 행위를 이유로 제소한 사실

- 성추행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 원고의 성추행 행위에 관해 피고가 A사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한 사실 및 A사의 대응

- 피고가 A사를 퇴직하게 된 경위

(다) 南野는 그 후 피고로부터 별건소송에서의

답변서를 팩시밀리로 수령하는 등 보충취재를 하여 본건 기사를 집필했다.

(4) 전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기사는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취재를 계기로, 보조참가인의 보충취재 및 편집을 거쳐 보조참가인의 판단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보를 그대로의 형태로 기사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보조참가인과 사전에 의사를 통한 다음 취재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와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만한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령 본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와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제공행위가 보조참가인과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독립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소괄(小括)

그러므로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제공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本訴)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사죄광고 내용, 별지2 사죄광고 게재조건 생략)

출 처 : 『판례타임즈』 1269호 PP. 226~231.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일본 판결 2

「붕괴된 생활쓰레기 리사이클 御殿場(고덴바) RDF처리의 실태」
라는 제목으로 된 서적의 저작·출판에 대해 전 고덴바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 内海重忠

피 고 : 亡 乙川太郎 소송승계인 乙川花子 외 2명

주식회사 綠風출판

피고대표자 대표취체역 : 高須次郎

靜岡지법 沼津지부 2005(7) 제21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7.3.13 민사부 판결, 청구 기각 · 확정

2006년12월26일 변론 종결

참조 조문 : 민법 709조 · 723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기 각 피고 등과 연대하여 500만 엔 및 2004년 6월 2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사실 및 이유

제2. 사실의 개요

제1. 청구

1. 피고 망 乙川太郎의 소송승계인 乙川花子は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과 연대하여 250만 엔, 동 乙川薫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과 연대하여 125만 엔, 동 乙川櫻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과 연대하여 125만 엔 및 2004년 6월 2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은 고덴바시(御殿場市) 시장이었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이하 「피고회사」로 한다)이 출판한 乙川太郎(이하 「太郎」으로 한다)의 저작 「붕괴된 생활쓰레기 리사이클 고덴바 RDF 처리의 실태」(RDF는 Refuse Derived Fuel 의 약자로 생활쓰레기 재생연료)라는 표제의 서적(이하 「본건 서적」으로 한다)에 대해, 소위 RDF 방식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도입을 원고가 적극 추진했는데 그 문제가 선거의 중요쟁점이 되면서 책임을 추궁당하는 원인이 되어 시장선거에서 낙선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술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 소송 계속(繫

屬)중에 太郎이 사망했기 때문에 승계자인 그의 유족과 피고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1. 우선 피고들은 본안에 앞서 본건 소송이 소권(訴權)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검토한다.

(1) 본건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본건 서적이 출판되어 본건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경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본건 서적은, 일간시즈오까(日刊静岡) 기자인 太郎이 동 지면에 1998년 5월부터 2001년 1월에 걸쳐 연재한 본건 시설에 관한 기사를 근거로 집필한 것으로, 2004년 6월 20일 피고회사에서 간행, 전국에 배포되고, 아사히신문, 일본경제신문, 시즈오까신문 각 지면에도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고텐바시 지역의 주요서점 점포 앞에 쌓아 놓고 동년 7월 17일 고텐바시내의 호텔에서 출판 축하회까지 개최되었다.

(나) 원고는 신문기사의 연재나 본건 서적의 출판과 기술(記述)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원고에 관한 기술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신문기사 연재 중에는 물론 본건 서적이 출판·판매된 뒤에도 원고와 그의 관계자들은 太郎이나 피고회사에 대해 그 내용에 관한 조희, 항의, 진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05년 1월에 실시된 고텐바시 시장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본건 서적이 상대후보 진영에 의해 비판재료를 이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본건 소송의 제기를 결의했다. 그리고 피고 등에 대해 사전 통고없이 본건 소송을

제기한 후 간사신문사인 마이니찌신문 누마즈(沼津)지국 앞으로, 본건 서적에는 곳곳에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허위기재가 있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팩스로 송신했다. 한편 피고회사 대표자는 마이니찌신문 기자로부터 제소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太郎도 피고회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앞으로 검토할 본건 서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그 권리구제를 청구한 것을 명확하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와 같은 동기나 목적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소송은 소권(訴權)의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의 주장은 채용하지 않는다.

2. 본건 서적의 명예훼손의 해당성에 대해 검토한다.

(1) 본건 서적(甲1)을 통람하면 그 개요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가) 본건 서적은 서장(序章)에 이어 제1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 그 뒤에 자료로 「고텐바·고야마(小山) RDF센터 계획개요」의 소개와 「전국의 중·대규모 RDF시설」의 일람표, 그리고 맺는 말로 끝내고 있다.

(나) 서장에서는, 새로운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의 하나로 등장한 RDF방식이 「꿈의 생활쓰레기 리사이클」이 아니라 「환멸, 혹은 지옥의 양상이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거기에는 리스크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워서 매각하려는 시공메이커의 비뚤어진 기업윤리가 표출되고 있다고 하여, 본건시설을 증거로 끌어내 그 계획의 당초부터 취

제한 입장을 통해 이 공공사업이 「폐배한 유산」임을 검증, 생활쓰레기 문제 본질의 일부분을 밝히려고 한 것이 본건 서적에서의 저자의 목적, 의도로 들어나고 있다.

(다) 이어 제1장에서는 「생활쓰레기 고형연료(RDF)처리를 결정」이라는 표제로 「[소각방식을 방기(放棄)]」라는 항목으로 시작하여 RDF방식의 계약체결과 본건 시설의 준공까지의 경과가 기술되어있다.

(라) 제2장 「꿈(희망)의 시설에서 지옥의 시설로」에서는 본건 시설에서의 시운전 개시부터 갖가지トラブル이 발생한 상황이 기술되었다. 제3장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행각」이라는 제목으로 본건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사이에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가 기술된 다음 개조공사가 끝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쓰면서 「이 화재로 가장 당황한 사람은 조합관리자인 고덴바시장. (중략) 표정도 경직되고, 어려운 사태에 몰린 자신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였다. (중략)」고 기술하고, 화재사고를 당한 후 그 재발방지를 위해 센서를 설치했으나, 그 영향으로 미묘한 변화에도 센서가 작동하여 시스템이 갑자기 정지하는 등 「만화적인 상태」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RDF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 「오싹할 정도의 공포가 몰려왔다」면서 시설개조에 의해 경비가 증대한 점을 지적하고, 본건 시설을 리사이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원흉으로 지적될 괴물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기술로 제3장의 끝을 맺었다.

제4장 「계속 고등(高騰)하는 유지·관리비」에서는 본건시설의 운영·관리비에 막대한 원가가 소요되는 점을 지적했으며, 제5장 「날조된 기술평가서」에서는 RDF방식을 선택하면서 제출받은 기술심사보고서에 얽힌 문제를, 제6장 「생산되어

도 용도가 없는 RDF」에서는 제조된 RDF의 소비처 확보문제를 각각 소개하고 있다.

(마) 제7장 「혼미(昏迷)하는 기업체와의 교섭」에 들어가면, 본건시설의 트러블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기업체 간의 교섭상황과 함께 책임을 추궁하려는 조합측이 기업체측에 의해 농락당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RDF문제로 현직 시장이 낙선)」이라는 항목에서는 2001년 1월에 실시된 고덴바 시장선거의 상황이 소개되었으며, 그 속에 본건 기술 (마) 및 (사)가 있다.

(바) 제8장 「제3자 기관에 검증을 위임」에서는, 고덴바시가 사태의 타개를 위해 제3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시설의 검증을 위임한 경위를 기술했으며, 제9장 「RDF 생산·연소 시설의 설치에 이의(異議)있다」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상황이 소개되었다. 제10장 「생활쓰레기 처리-원점으로 돌아가다」에서는 그 이후의 고덴바시에서의 생활쓰레기 수집과 처리상황을, 제11장 「그리고 제소(提訴)」에서는 RDF문제에 관한 기업체와의 교섭이 암초에 걸려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각각 소개했다. 종장(終章)인 제12장 「RDF가 가져다준 것」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이라는 미명아래 『꿈의 리사이클』로 출발한, 가연(可燃)생활쓰레기를 고형(固形)연료화하는 RDF시설은 고덴바·고야마(小山)의 경우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지옥의 리사이클』로 변모하고 말았다」고 본건 시설을 총괄한 다음 생활쓰레기 시스템을 매각하는 기업체의 무책임한 상법을 비판하고, 기업체와의 재판결과를 전망하면서 본문을 마감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은 본건 서적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기술 부분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신문이나 서적 등의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데(최고재판소 1956년 7월 20일 판결), 본건 서적의 논지로서 일관되고 있는 본건 시설에 대한 통렬하고도 신랄한 비판과 함께 위에서 적시된 사실을 읽었을 때, 이와 같은 비판의 화살이 본건 시설의 도입을 결정한 행정당국, 특히 그 중에서도 최고책임자였던 원고에게 향하고 있음을 순수하게 읽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로부터 받는 원고의 정치가로서의 명성, 신용 등의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서적의 원고에 관한 기술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다음은 본건 각 기술의 진실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토한다.

전기 본건 서적의 내용을 보면, 그 기술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음은 명백하며, 또한 본건 증거(을41, 피고회사 대표자 본인)에 의하면 출판의 목적과 의도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면 본건 서적에 기술된 내용의 진실성과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1) 우선 본건 증거(갑3, 6, 9, 11, 17, 19, 을1, 3, 5, 7, 9, 10, 14, 17, 19, 36, 47, 49, 51, 원고본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조합은 고텐바시와 고야마쵸(町·우리나

라 읍(邑)에 해당)가 쌍방에 걸쳐있는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조직한 지방자치법상의 일부 사무조직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에 의해 구성되어있다. 집행기관인 관리자 등의 인선은 고텐바시와 고야마쵸의 장이 호선으로 선임되고, 사무는 고텐바시와 고야마쵸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나) 조합은 1989년 8월 가연생활쓰레기 소각방식으로 스토커방식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으며, 1990년 12월 28일 고텐바시, 고야마쵸, 조합 및 고야마쵸 桑木구 간에 스토커방식에 의한 가연생활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의 건설과 조업(操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다) 한편 1991년 3월 스위스의 카트렐사가 개발한 RDF방식을 미쓰비시상사 등에서 기술을 도입했다는 신문보도가 나온 것을 계기로, 고텐바시에서 정보수집, 해외시찰 등을 통해 검토를 계속한 한 끝에, 1992년 말 조합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 카트렐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도달했다.

(라) 이러한 가운데, 원고는 1992년 말 국토청(당시) 대도시권 정비국 특별정비과장직을 사퇴, 1993년 1월에 실시된 고텐바 시장선거에 출마하여 첫 당선을 했다. 그리고 전임자로부터는, 신청소센터의 안건에 관해서는 RDF방식으로 한다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속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며, 또한 桑木구와는 소각방식에 의한 협정이 맺어져 있으므로 처리방식의 결정과 병행하여 해당지역의 조정을 거친다는 취지의 인계를 받았다.

(마) 원고는 시장에 취임한 직후인 1993년 3월 「고텐바시 생활쓰레기처리기본계획책정검토위원회」를 발족시켜 위원장에 야스다(安田)조교수를 위촉하는 한편 후생성(당시)의 외곽단체인 폐기

물연구재단의 평가위원장으로 출신대학의 동급생이었던 요코다(横田)교수를 고텐바시로 초빙, 조합사무국에 대해 고행연료화시설의 역사, 일본의 기술상황, 조사상황 등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원고는 1993년 7월 19일에 개최된 조합의회(議會)의 위원회에서, 관리자로서 RDF의 추진화는 종전과 같이 해나가겠다고 했으며, RDF 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생활쓰레기를 연소시키는 것만으로는 치졸한 처리방법이고, 일단 고행연료로 하여 이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편이 우수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원고는 카트렐방식이나, 리사이클매니지먼트 방식이나, 혹은 그 외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을 좀 더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해, 결국 카트렐방식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채 고행연료 처리방식의 방향으로 나간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바) 그런데 건설예정지인 桑木구에서는, 일단 소각방식으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F방식 도입이 수면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태도가 경화되고, 또한 桑木구가 속해있는 고야마쵸(小山町) 의회에서도 고텐바시의 주도로 RDF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저항감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어 「조합의회생활쓰레기 소각장건설검토위원회」에서는 고텐바시 시장이 桑木구를 방문, 주민들에게 사죄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했다. 이에 조합직원이 桑木구 전 가구를 호별방문, 사과와 해명을 했으며, 그 후 원고와 다시로 고야마쵸(町·우리나라 읍에 해당) 정장(町長)도 桑木구를 방문했다.

(사) 그 후 1994년 3월 조합의회의 위원회에서 고행연료화 처리방식을 정식으로 채용키로 한데 이어 동년 10월에는 동 위원회에서 고행연료화의 방식을 카트렐방식으로 결정했으며, 동년 12월 9

일 고텐바시, 고야마쵸, 조합 및 桑木구 간에 RDF방식에 의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관해 상기 협정을 일부 변경하여 교환했다. 이어 동월 13일 본건 시설의 건설공사실시계약무위탁계약이 체결되고 다음 해에 공사청부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95년 11월 1일 본건 시설의 건설공사가 착공, 진행되는 한편 조합의회의 위원회에서는 RDF의 소비처 확보문제 등이 토의되었으며 국내 유사시설에 대한 시찰도 계속되었다.

(아) 다마호(玉穂)지구에 건축되는 옥내폴에 RDF 고행원료 보일러를 채용하려는 고텐바시의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다이옥신 발생의 위험성을 내세워 도입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원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물리치고 채용을 결정했다.

(자) 한편 본건 시설에서는 1998년 2월 3일부터 시운전 조정용 생활쓰레기의 반입이 시작되었으나, 변경공사의 필요성, 당초의 예산을 대폭 상회하는 유지관리비문제, 제조된 RDF의 품질과 제조공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두 번의 화재사건까지 겹쳐, 1998년 5월 31일 화재복구공사, 2000년 2월 28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개조공사를 거쳐 7월 2일에 완료했다.

(차) 1998년 7월 8일 조합은 본건 시설의 일련의 트러블과 관련, 공동기업체로부터 납기지연손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 본건 시설의 개조공사와 관계되는 몇 가지 제안을 받았다. 이와 관련 1999년 5월 20일 개최된 조합의회 위원회에서, 원고는 납기지연손해금 부과문제를 언급, 이를 부과했을 경우 재판에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며, 계쟁(係爭)기간, 화해권고까지의 과정도 지연될 염려가 있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조합에도 느슨한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도 없어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

한 일련의 원고의 발언은 모두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다.

(카) 그런 가운데, 현직인 원고와 시 직원이었던 나가다(長田) 현 시장이 입후보한 2001년 1월의 고텐바시 시장선거에서 현직 유리라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얼굴의 나가다 현 시장이 당선되었다. 선거 직후 원고 진영의 시의원을 취재한 太郎은 「RDF가 실패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것이 현직의 유일한 실정이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며, 이러한 선거결과를 보도한 시즈오카(靜岡)신문도 「당초의 의도대로 기능하지 않은 생활쓰레기고형연료화시설 『RDF센터』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선거전을 통해 단숨에 높아져, 예상 이상의 비판표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본건 각 기술의 진실성, 상당성을 검토한다.

(가) 본건 기술 (가) 내지 (다)에 대하여

• 본건 기술 (가) 내지 (다)에서, 원고가 특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①원고가 스스로 정보수집, 조사·연구를 하여 RDF방식의 채용에 「go sign을 내렸다」는 점 ②원고 스스로 桑木구의 전 가구를 방문, 사죄했다고 한 점 ③RDF방식의 채용을 위해 다시로 고야마쥬 정장(町長)과 의원 등에게 작용하여 설득했다고 한 점 등으로,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기술에 의해 일반독자에게 원고가 RDF방식의 채용을 주도했다는 오인(誤認)을 주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이를 검토해 보면, 상기 인정사실 (1)(나) 내지 (아)에 의하면 원고가 고텐바 시장 취임 이전부터 RDF방식을 후보의 입장에서 검토했으며, 시장 취임 후 조합관리자의 지위를 이어받았을 때도 RDF방식이라는 방향이 잡혀있으므로 계속 검토되어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계를 받았

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상황을 보면, 건설예정지인 桑木구의 설명과 설득이 끝나지 않았고, 고텐바시의 추진 방법에 桑木구의 태도가 경화(硬化)되어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고야마쥬 의회에서도 RDF방식 채용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다시로 고야마쥬의 장(長)조차도 고텐바시의 추진 방법에 비판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 RDF방식 중 카트렐방식으로 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원고의 시장 취임 때는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원고는 시장 취임 직후 요코다 교수를 방문, RDF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한데 이어 의원, 직원, 桑木구 주민에게 국내 유사시설에 대한 시찰을 계속했고, 스스로도 취임 1년째가 되는 1993년도에 3회에 걸쳐 시설 시찰을 하는 한편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RDF의 유의성(有意性)을 설명하고, RDF에 관한 심포지엄에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의견을 펴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원고에 의한 외형적 사실을 볼 때 원고는 전임자로부터의 인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에 관해 그 나름대로의 조사·연구를 하여 얻은 식견에 근거하여 그 채용 여부를 판단했으리라는 것을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적하는 ①에 대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귀결로 원고가 「go sign을 내렸다」고 표현한 것은 결코 부당한 것도 과대한 것도 아니다.

• 더구나 원고가 지적하는 ②의 점에 관해, 본건 기술(記述) (나)에서는 원고 자신이 桑木구의 전 가구를 방문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조합 직원이

전 가구를 방문하여 사죄와 설득을 했고, 또한 고텐바 시장인 원고 스스로가 설명을 위해 桑木구로 갔다는 점에서는 부합하고 있어, 그 주요부분에 있어 큰 오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원고가 지적하는 ③의 점에 대해 검토하면, 이상과 같은 원고의 일련의 활동에 의한 최종적인 결과로서, 고텐바시의 추진 방법에 태도가 굳어져있던 桑木구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이론이 있던 고야마쵸 의회나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고야마쵸의 장도 RDF방식에 찬동하여 본건시설의 건설에 이르렀다는 경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적극적인 태도에 소극적이었던 관계자들이 감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추인(推認)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 따라서 본건 기술 (가) 내지 (다)에 대해서는, 그 중요부분 모두가 진실이거나 혹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본건 기술 (라)에 대하여

상기 인정사실 (1)(차)에 의하면, 원고가 위치한 입장과 거기에서 나타난 일련의 언동으로 볼 때 「불가해(不可解)」, 「우유부단한 대응」, 「소극적인 태도」라는 평가나 비판은 하등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건 기술 (라)에 대하여, 합동위원회에서의 원고의 언동은 사실이며, 그 밖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원고의 언동에 대한 시민일반의 평가로서 적시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든가 혹은 그 평가를 원고의 언동에 대한 논평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공평한 논평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 본건 기술 (마) 내지 (사)에 대하여

상기 인정사실 (1)(카)에 의하면, 시장선거에서 RDF문제가 클로즈업 되고, 원고에 대한 비판표가 결집되었다는 분석이 나와, 太郎도, 원고 진영

의 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취재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RDF문제가 「선거전의 자웅을 결정하는 과제」였다는 평가가 타당했으며, 그 기술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기술 (마) 내지 (아)에 대해서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인정된다.

(라) 본건 기술 (자)에 대하여

상기 인정사실 (1)(아)에 의하면, 고텐바시는 RDF의 소비처의 하나인 다마호(玉穗)지구의 옥내풀의 열원(熱源)으로 고휘화연료를 쓰도록 계획했으나, 다이옥신 발생에 의구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으나 결국 이를 밀어붙여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의향이 작용했다는 것을 용이하게 추인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인에 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기술 (자)에 대해서도, 적어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이상과 같이 원고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본건 서적의 각 기술은 모두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혹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공정한 논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64호 PP. 302~316.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